

제172회 영등포구의회

제 2 차 정 려 회

교육·복지·사람 중심 새 영등포 

2012년 주요업무 보고



부동산정보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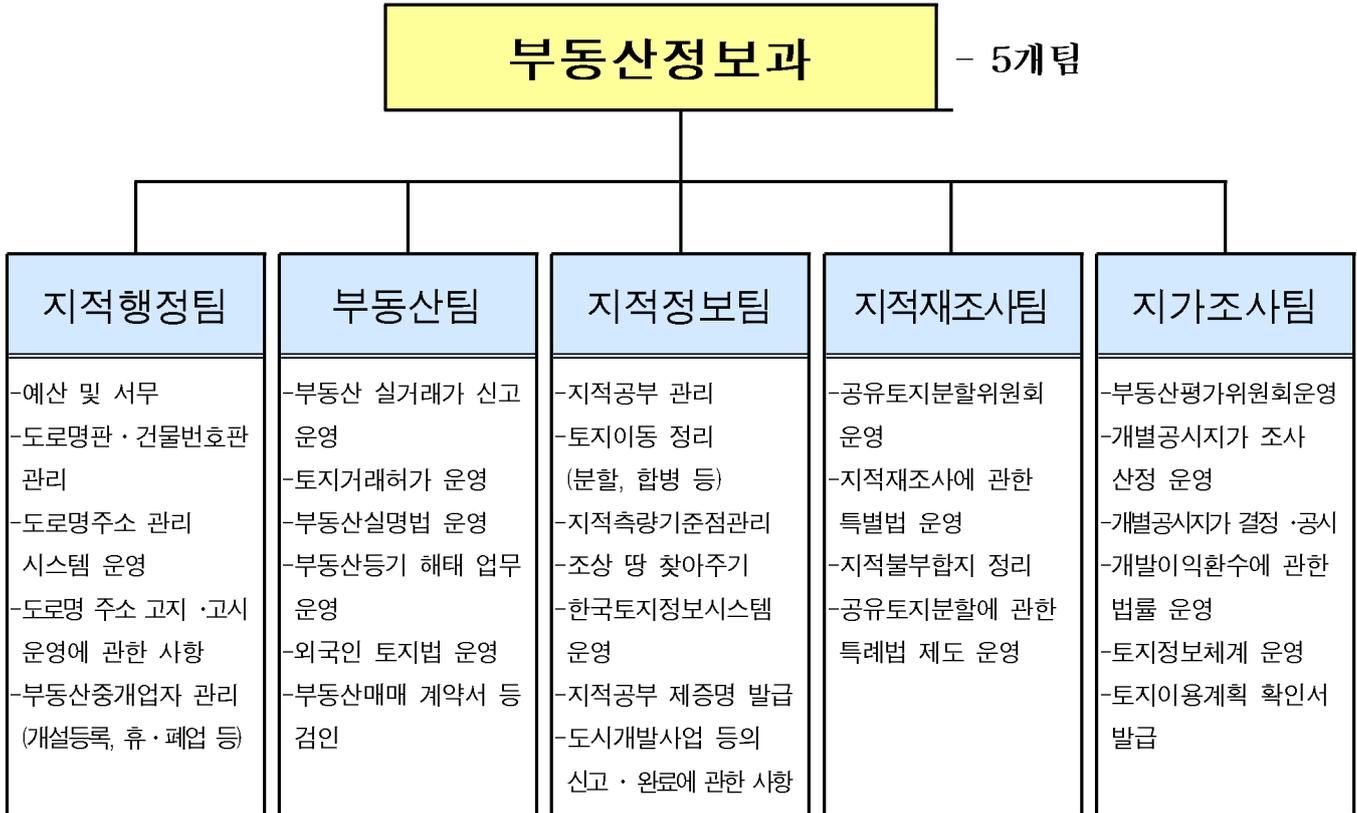
보고 순서

I. 일반 현황	••••	1
II. 2012 주요업무 실적	••••	3
III. 2013 주요업무 계획	••••	12
IV. 특수사업	••••	20

I. 일반 현황

1

조직



2

인력

구분	계	일반직						기능직				별정·계약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6급	7급	8급	9급	6급	7급	8급	9급
정원	24	-	1	4	6	7	5	-	-	1					
현원	24	-	1	5	11	3	3	-	1	-					
과부족		-	-	1	5	△4	△2	-	1	△1					

3

주요시설 및 장비

구분	명칭	현황	비고
장비	마티즈	일반승용차 (2008년식)	지적행정팀
	플로터	HP디자인젯 T770HD (2011년식)	지가조사팀

4

예산 집행현황

(단위 : 천원)

단위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계	309,082	223,716	72.4
부동산정책 투명성 제고	94,776	62,117	65.5
실생활 도로명주소 정착	79,519	47,538	59.8
기본경비	134,787	114,061	84.6

II. 2012 주요업무 실적

연 번	사 업 명	쪽
①	실생활 도로명주소 정착	4
②	토지이동 지적측량 민원원스톱서비스 시행	5
③	토지이동결의서 등 보존문서 전산화	6
④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7
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관리	8
⑥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	9
⑦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 운영	10
⑧	개별공시지가 조사 내실화	11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확정됨에 따라 조기에 구민 생활속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안내시설물 보완정비 및 유지관리와 도로명주소 변경 등에 따른 시설물 재정비로 구민 이용편의 제공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1.1 ~12.31
- 대 상 : 도로명판 1,889개, 건물번호판 27,013개
- 내 용 :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홍보

□ 추진실적

- 도로명주소 시설물 일체조사
 - 도로명판 61개 설치, 159개 정비
 - 건물번호판 1,019개 설치, 311개 정비
-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 배부 : 책자형 1,000부, 접지형 18,000부
- 명예도로 부여 공고 : 3.29
- 도로명주소 홍보
 -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및 배부(봄꽃축제행사) : 4.13 ~ 4.17
 - 도로명주소 홍보 : 민방위 교육시 홍보 - 50회
 -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및 배부(중개업자 교육 참석자) : 9.17
- 도로명주소 고지, 고시(부여,변경,폐지) : 26회(고지-664건, 고시-463건)

□ 소요예산 : 79,519천원 - 국 17, 시 11, 구비 72%

□ 향후계획

- 도로명판 전수조사에 따른 유지보수
- 도로명주소 홍보
 - 정기 간행물(영등포구 소식지, 인터넷 방송국등) 및 각종행사 활용 홍보
 - 대상자별 홍보를 통한 도로명주소 사용 및 활용 유도

2 토지이동 지적측량 민원원스톱서비스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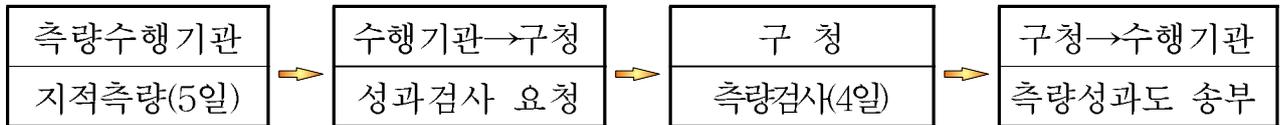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측량과 성과검사를 ONE-STOP으로 실시하여 지적측량민원 처리기간(9일→5일)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등 장시간 소요되는 민원에 따른 불편해소 및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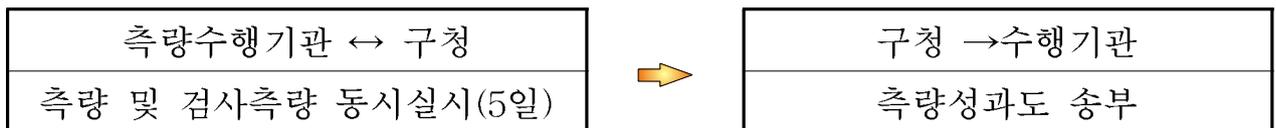
- 시 행 일 : 연중
- 추진대상 : 측량이 수반되는 토지이동(토지분할 등)
- 개선내용
 - 측량일자가 지정되면 측량수행자와 측량검사자(구청)가 동시에 현장에 출장하여 동시측량실시
 - 지적측량현장에서 쌍방입회인의 고객 불만사항을 현지에서 안내

【분할측량 개선】

〈 개선전 - 총9일 〉



〈 개선후 - 총5일 〉



※ 지적측량의 처리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어 구민만족도 향상

□ 추진실적

(10. 31 현재)

구 분	계	토지이동 지적측량		비 고
		토지분할	확정측량	
2012	49	38	11	

□ 소요예산 : 비예산

□ 향후계획

- 지적측량의 원스톱 지속시행으로 민원불편 해소 및 측량의 정확성 증대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

2012년 제2차 정례회+20121107

영구보존문서인 토지이동결의서등을 지적업무에 적합하도록 전산(DB)화 하여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폐쇄지적도 및 구토지대장과 연계하는 등 업무의 자동화에 따른 대민서비스 향상과 전국 온라인망 구축에 대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4 ~ 12월
- 추진내용
 - 토지이동결의서 스캐닝 작업을 통한 디지털 이미지화
 - 이미지화하여 지적전산서버(KLIS서버장비)에 탑재 및 백업디스크화
 - 지번 및 중요정보색인을 통한 D/B 구축
 - 기존 폐쇄 지적(임야)도 및 구토지대장과 연계한 시스템 구축
- 추진대상 : 116,578매
 - 1단계(2012년 전산화) : '76년~'90년 토지이동결의서(45,578매)
 - 2단계(2013년 전산화) : '91년~'10년 토지이동결의서(71,000매)

□ 추진실적

- 토지이동결의서 전산용역계약 : 4.17
- 토지이동결의서 스캔완료 : 9.12
- 토지이동결의서 색인작업 완료 : 9.26

□ 소요예산 : 19,240천원 - 구비 100%

□ 향후계획

- 토지이동결의서 색인자료 대사 실시

1필지의 토지가 2인 이상의 소유로 등기된 공유토지를 각종 법 규제의 제한을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 받을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상 토지소유자가 시행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여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2. 5.23 ~ 2015. 5.22
- 추진대상
 -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

□ 추진실적

-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구성 : 6. 5
- 공유토지분할특례법시행안내 홍보 : 우편발송 및 관내 신문 등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대상지 확대실시 : 약 200필지
 - 당초 :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지역 등 제외
 - 완화 : 정비구역 지정 이전부터 공유지분인 토지를 포함하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분할가능
- 공유토지분할신청처리
 - 공유토지분할신청접수 : 7건
 - 분할개시결정 및 측량실시 : 5건
 -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 3건

□ 소요예산 : 4,740천원 - 구비 100%

□ 향후계획

- 공정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을 통한 주민의 재산권 보호
- 공유자 합의에 의거 자율적으로 분할 및 청산을 하도록 계도

5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관리

구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 불법 중개행위를 지도·단속함으로써 내실 있는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 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연중
- 사업내용
 - 위법·부당한 부동산 중개행위를 근절하여 공신력 강화
 - 중개사무소 종사자 연수교육을 통한 전문직업인 지도·육성
 - 구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 불법 중개행위를 지도·단속함으로써 내실 있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이사철 중개업소 특별 지도 점검 실시
 - 민원발생 다발업소 및 위법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중개업소 집중단속

□ 추진실적

-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 연중
- 위법 중개업소 행정조치

계	고발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비고
				건수	금액(원)	
14	2	1	10	1	400,000	

- 중개업자의 사망 등 결격 사유자 색출 정비
 - 추진기간 : 7. 1 ~ 8.31(930개 업소)완료
- 중개업종사자 교육 : 9.17(월) - 2회 795명 참석

□ 소요예산 : 6,000천원 - 구비 100%

□ 향후계획

- 불법중개행위 등 지도점검
- 중개서비스 해피콜 모니터 결과 불만족 업소 점검

6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의 투기억제와 지가안정을 위한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유도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

□ 토지거래허가제의 의의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의 투지억제와 지가안정을 위한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유도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

□ 대상지역

지구명	위치	면적(m ²)	지정기간	허가 기준면적
준공업지역	양평동외 5개동 일대	9,380,000	'08. 7.29 ~ '13. 7.28	660m ² 초과
녹지지역 (한강, 안양천 둔치)	여의도동외 2개동 일대	8,720,000	'12. 5.31 ~ '13. 5.30	100m ² 초과

□ 추진실적

- 토지거래계약허가 처리 : 63건
- 사후 이용 실태조사 : 25건(매년 5. 1 ~ 7.31)

□ 소요예산 : 비예산

□ 향후계획

- 토지거래계약허가제 운영 : 연중
 - 허가기준 : 실수요자 판단, 토지이용 목적의 접합 여부 등
- 위반자 행정조치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자 : 고발
 - 이용의무 위반자 :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 이행강제금 부과

7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 운영

부동산 실거래시 지방세·국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하여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여 등기제도를 악용한 탈세·탈법행위 위반자를 밝혀내어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연중
- 신고대상 :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
※ 신고예외 :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주택을 제외한 분양권 매매
- 신고기간 :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고의무자 : 토지·건물(분양권 포함) 매매당사자 및 중개업자

□ 추진실적

- 부동산실거래신고 접수 및 처리
 - 신고처리 : 5,263건(실거래신고 3,555건, 검인 1,708건)
- 부동산거래신고의무 위반 과태료부과
 - 실거래가 허위신고 : 9명 29,095,400원
 - 거래신고 지연 : 11명 45,000,000원

□ 소요예산 : 비예산

□ 향후계획

- 부동산실거래신고 자료 정밀한 검증 실시 및 지원·단속
 - 실거래가 단속반 및 신고센터 운영
 - 이중계약서 작성, 허위신고자 등에 대한 상시적인 단속 실시
 - 부동산거래 신고 금액이 검증가격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래당사자 수시 조사
- 신고위반 조사
 - 무신고, 허위신고, 지연신고자 등에 대한 면밀한 정밀조사
 - 중개업자 중개 후 당사자거래 허위신고 등
- 위반자 행정조치
 - 거래당사자 : 허위신고(취득세의 1.5배이하), 지연신고(5백만원이하) 과태료

8 개별공시지가 조사 내실화

토지관련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조사·결정함으로써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구현

□ 사업개요

- 단계별 일정 및 특성변경 사항과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가산정의 적정성 및 신뢰성 제고
- 국세, 지방세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

□ 추진실적

- 2012.1.1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 43,171필지
 -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 : 1. 2 ~ 4.12
 - 열람 및 의견제출 처리 : 4.13 ~ 5.15
 - 의견제출 10필지(상향4, 하향1, 적정5)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43,171필지) : 5.31
 -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5. 31 ~ 6.29
 - 이의신청 32필지(상향 2, 하향1, 적정 29)
- 2012.7.1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 67필지
 -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 : 7. 2 ~ 8.17
 - 열람 및 의견제출 처리 : 9. 3 ~ 10.19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67필지) : 10.31
- 영등포구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 : 4회

□ 소요예산 : 74,105천원 - 국 43, 구비 53%

□ 향후계획

- 2012.7.1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 이의신청 접수 : 10.31 ~ 11.29
 -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 : 11.30 ~ 12.28

○ 2013년 표준지 전수 조사

- 기 간 : '12.10. 1 ~ '13. 1. 30
- 대 상 : 1,207필지(표준지)

- 조사내용 : 가격불균형, 신규·삭제대상, 급등락지역 분석 및 검토

Ⅲ. 2013 주요업무 계획

연 번	사 업 명	쪽
①	개별공시지가 조사 내실화	13
②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관리	14
③	부동산실거래 신고제 운영	15
④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	16
⑤	토지이동결의서 등 보존문서 전산화	17
⑥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	18
⑦	실생활 도로명주소 정착	19

1 개별공시지가 조사 내실화

토지관련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조사·결정함으로써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구현

□ 사업개요

- 단계별 일정 및 특성변경 사항과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가산정의 적정성 및 신뢰성 제고
- 국세, 지방세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

□ 추진방향

- 토지소유자등으로부터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을 통한 의견수렴
-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 단계별 법정 일정을 준수하여 조세부과 기관의 지가 수요에 적기 제공

□ 추진계획

- 2013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구 분	1. 1 기준	7. 1 기준
토지특성조사	1. 2 ~ 2.24	7. 2 ~ 8. 3
지가산정 및 검증	3. 2 ~ 4.12	8. 6 ~ 8.31
지가열람, 의견제출 및 검증	4.13 ~ 5. 9	9. 3 ~ 10.12
지가결정·공시	5.31	10.31
이의신청 및 처리	5.31 ~ 7.30	10.31 ~ 12.28

-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 전문 감정평가사와 직접 또는 유선상담
 - 지가산정에 대한 전문지식으로 일반인에게 궁금한 점 설명
- 2014년 표준지 전수조사
 - 기 간 : 10. 1 ~ 12.31
 - 과대, 과소 등 가격불균형 유사표준지 조사

□ 예 산 액 : 62,558천원 - 국 50, 구비 50%

2012년 제2차 정례회+20121107

2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관리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중개 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선량한 구민들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중개업자의 공신력 향상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 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연중
- 내 용
 - 위법·부당한 중개행위를 상시 지도점검
 - 모범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 관련
 - 중개사무소 종사자 연수교육을 통한 전문직업인 지도·육성
 - 부동산중개업자 결격자 정리
-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계	공인중개사	중개인	법인	비 고
939	760	170	9	

□ 추진방향

- 위법·부당한 부동산 중개행위를 상시 지도 점검하여 중개업자의 공신력 제고
-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 강화
- 중개업자의 고품격 중개문화 정착

□ 추진계획

- 반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민원 유발업소 등 중점 지도점검 실시
-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중개사무소에 대한 모범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
-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업무의 전문성 향상
-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결격자 정비를 통하여 공신력 제고

□ 예 산 액 : 7,590천원 - 구비 100%

2012년 제2차 정례회+20121107

부동산 실거래시 지방세·국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하여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여 등기제도를 악용한 탈세·탈법행위 위반자를 밝혀내어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근거법률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신고대상 :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
- 신고예외 :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주택을 제외한 분양권 매매
- 신고기간 :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고의무자 : 토지·건물(분양권 포함) 매매당사자 및 중개업자

□ 추진방향

-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확보
- 투기수요 방지 및 공평 과세 기반 구축

□ 추진계획

- 부동산실거래신고 자료 정밀한 검증 실시 및 지원·단속
 - 실거래가 단속반 및 신고센터 운영
 - 이중계약서 작성, 허위신고자 등에 대한 상시적인 단속 실시
 - 부동산거래 신고 금액이 검증가격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래당사자 수시 조사
- 신고위반 조사
 - 무신고, 허위신고, 지연신고자 등에 대한 면밀한 정밀조사
 - 중개업자 중개 후 당사자거래 허위신고 등
- 위반자 행정조치
 - 거래당사자 : 허위신고(취득세의 1.5배이하), 지연신고(5백만원이하) 과태료
 - 중개업자 :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또는 자격정지 6월 이내

□ 예산액 : 비예산

4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운영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의 투기억제와 지가안정을 위한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유도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

□ 대상지역

지구명	위치	면적(㎡)	지정기간	허가 기준면적
준공업지역	양평동외 5개동 일대	9,380,000	'08. 7.29 ~ '13. 7.28	660㎡초과
녹지지역 (한강, 안양천 둔치)	여의도동외 2개동 일대	8,720,000	'12. 5.31 ~ '13. 5.30	100㎡초과

□ 추진방향

- 부동산의 투기적 요소 억제 및 지가 안정
-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토지거래풍토 유도
-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국토 균형발전

□ 추진계획

-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 연중
 - 허가기준 : 실수요자 판단, 토지이용 목적의 적합 여부 등
 - 토지이용의무 및 사후관리 : 이용목적별 의무기간, 토지이용 실태관리
- 사후이용실태 조사
 - 조사대상 :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거래한 모든 토지
 - 조사기간 : 매년 5. 1 ~ 7. 31
 - 조사내용 :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지 여부조사
- 위반자 행정조치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자 : 고발조치
 - 이용의무 위반자 : 취득가액의 10%범위 내 이행강제금 부과

□ 예산액 : 비예산

2012년 제2차 정례회+20121107

영구보존문서인 토지이동결의서등을 지적업무에 적합하도록 전산(DB)화하여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폐쇄지적도 및 구토지대장과 연계하는 등 업무의 자동화에 따른 대민서비스 향상과 전국 온라인망 구축에 대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4 ~ 12월
- 추진내용
 - 토지이동결의서 스캐닝 작업을 통한 디지털 이미지화
 - 이미지화하여 지적전산서버(KLIS서버장비)에 탑재 및 백업디스크화
 - 지번 및 중요정보색인을 통한 D/B 구축
 - 기존 폐쇄 지적(임야)도 및 구토지대장과 연계한 시스템 구축
- 추진대상 : 116,578매
 - 1단계(2012년 전산화) : '76년~'90년 토지이동결의서(45,578매)
 - 2단계(2013년 전산화) : '91년~'10년 토지이동결의서(71,000매)

□ 추진방향

- 영구보존문서 전산화에 따른 신속한 민원처리로 효율성제고
-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민간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참여복지 실현

□ 추진계획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4월
- 전산파일 구축 및 속성 색인작업 : 5 ~ 10월
- 성과물 검수 및 시범운영 : 11월

□ 예산액 : 35,926천원 - 구비 100%

1필지의 토지가 2인 이상의 소유로 등기된 공유토지를 각종 법 규제의 제한을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 받을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상 토지소유자가 시행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여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2. 5.23 ~ 2015. 5.22
- 추진대상 : 약 100필지
 -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인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

□ 추진방향

- 공정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을 통한 주민의 재산권 보호
- 공유자 합의에 의거 자율적으로 분할 및 청산을 하도록 제도

□ 추진계획

- 신청요건 :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
- 내 용
 - 공유자 신청에 의거 조사, 측량 및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의결 거쳐 토지분할
 - 시행홍보 : 공유토지 특례법 홍보 (우편발송 및 관내신문 등)
 - 분할처리절차



□ 예 산 액 : 4,960천원 - 구비 100%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확정됨에 따라 조기에 구민 생활속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안내시설물 보완정비 및 유지관리와 도로명주소 변경 등에 따른 시설물 재정비로 구민 이용편의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내용
 - 도로명 변경구간 안내시설(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재정비
 - 도로명판 추가설치 및 기존 시설물 유지관리
 - 각종 홍보매체(홈페이지, 전광판 등)를 활용한 홍보

□ 추진방향

- 도로명주소의 활용촉진으로 조기정착에 기여
- 법적 주소전환에 따른 주민혼란 방지 및 주민 인지도 향상
-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선진 행정서비스체계 구축

□ 추진계획

-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훼손, 탈착 정비 등)
 - 도로명판(1,889개), 건물번호판(27,013개)
- 위치 찾기 선진화제도 도입 추진
 -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상세주소 등을 부여하여 행정서비스 질 향상 및 위치 찾기 편리성 제고
- 도로명판 추가설치
 - 도로명주소로 위치 찾기 미흡지역 도로명판 추가설치
- 각종 홍보물(전단지, 배너, 홍보물품등)제작 도로명주소 홍보
 - 정기 간행물(영등포구 소식지, 인터넷 방송국등) 및 각종행사 활용 홍보
 - 대상자별 홍보를 통한 도로명주소 사용 및 활용 유도

□ 예 산 액 : 53,600천원 - 구비 100%

IV. 특수사업

1 부동산공부 동주민센터 확대발급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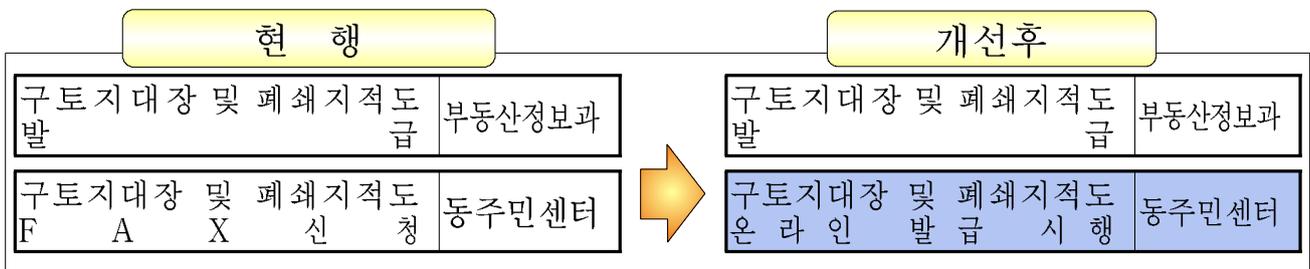
부동산 관련 제증명 중 구청에서 발급하는 구토지대장, 폐쇄지적도를 동 주민센터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비예산 사업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 불편을 해소 및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사업목표

- 온라인 발급으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찾아가는 원스톱 대민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3. 1월 ~ 2월
- 시행시기 : 2013. 3. 2
- 온라인발급대상 : 구토지대장(카드대장) 및 폐쇄지적도



□ 추진방향

- 장시간 소요되는 FAX민원을 온라인발급민원으로 전환하여 민원불편해소
- 빠른 민원처리에 따른 행정의 신뢰도 향상
- 부동산민원의 업무혁신으로 행정의 시너지 효과 증대

□ 세부 추진계획

- 구토지대장 및 폐쇄지적도 온라인발급프로그램 개발 : 비예산
- 프로그램 업로드 등 설치 : 전산실 서버
- 동주민센터온라인 프로그램 설치 및 순회교육 실시

□ 예 산 액 : 비예산

2012년 제2차 정례회+20121107

2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사업 추진

종전의 18종(2개 부처, 5개 법령, 4개 정보시스템)으로 분산 관리 해오던 부동산공부(지적, 건축물, 등기, 가격 등)를 1종의 부동산 종합공부(부동산종합증명서)로 일원화하여 한눈에 보는 맞춤형 종합공부를 구축함으로써 국가공적장부의 신뢰성 확보와 부동산종합공부서비스구축·운영

□ 사업목표

- 부동산 공부를 통합하여 행정 간소화 및 민원서비스 개선
- 여러 개의 부동산 정보를 하나의 공적장부에 담아 행정의 정확성 및 효율성 개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9 ~ 2014.12
 - ※ 2011년도 시범자치단체(경기 의왕시 등)에서 11종의 부동산 종합공부를 시범서비스 중임
- 사업대상
 - 1단계(2012년) 11종 : 지적관련 공부 7종, 건축물관련 공부 4종
 - 2단계(2013년) 15종 : 토지이용계획 1종, 토지가격관련 공부 3종
 - 3단계(2014년) 18종 : 부동산등기관련 공부 3종

□ 추진방향

- 부동산 종합공부(부동산종합증명서)로 일원화하여 한눈에 보는 맞춤형 종합공부를 구축함으로써 국가공적장부의 신뢰성 확보

□ 세부 추진계획

- 2012. 9 ~ 2012.12 : 토지대장 및 지적도면 정비
 - 토지대장과 지적도면 상호간 불일치 자료 정비로 공간정보체계 마련
- 2012. 9 ~ 2014.12 : 국·공유지 정비
 - 국·공유지 지목·기관명칭 현실화 및 토지합병을 통한 재산관리 효율화
- 2012. 9 ~ 2014.12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정보 정비
 - 토지정보와 건축물정보 일치화를 통한 부동산 행정정보의 융·복합 활용기반 마련

□ 예산액 : 비예산

2012년 제2차 정례회+20121107